

고 시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-71호

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49(2010.12.09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-43(2013.06.13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.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2018년 7월 5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정비사업명 :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(면적)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(면적 : 112,694.3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성명 :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장두천)
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59-2, 1층
4. 변경내용 :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2개월
 ※ 변경사유 :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3년 6월 13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변경없음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변경없음
9.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 - 가.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: 변경없음
 - 나.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: 변경없음
 - 다.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내역 : 변경없음
10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 -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☎ 351-7423)에 비치